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유형에 대해 수출승인 절차 간소화 대상을 정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승인 간소화 대상(5개) 및 방안 구체화 (안 제19조의3 신설)

-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수출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조항을 법령에 신설*함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5개** 수출승인 대상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등 수출승인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

*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경미한 사실 변경, ◉100% 소유 자회사,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공동연구, ◉인허가 획득, ◉소송 대응

나. 조치명령 통지서 및 이행결과 제출 서식 신설

(안 제40조 개정, 별지 제4호, 제5호 신설)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보호조치 미흡시 산업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대상기관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명령이 가능*함. 조치명령시 산업부장관은 조치명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상기관은 이행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제출서식을 마련

* 「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 심사 지원을 위해 기술안보센터의 권한·역할 구체화

(안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개정)

- 기술안보센터에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 국가핵심기술 판정·수출·M&A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열람 시스템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M&A 심사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전문위에 참석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등 센터 역할 구체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기술안보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2, 전자우편: junhyuk.se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00호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3-15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호 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의2”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 제6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기술안보센터”로,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www.nct.or.kr)”을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업무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를 “영 제13조의3”으로, “자문”을 “자문,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응용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서비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18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기술 내지 수출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
 2.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기술을 최초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내 대상기관이 전부 보유하는 경우
 4. 제17조제8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 정부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17조제9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11조 제4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22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3 제1항”을 “영 제18조의4제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의)”를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8조의2 제2항”을 “영 제1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4 및 제18조의5”를 “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1조의2 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11조의2 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해외인수·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를 “(해외인수·합

병등의 신고 검토 및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31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2조 제1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0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 제2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2조 제3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 제2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단서 중 “영 제19조 제2항”을 “영 제19조제2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의 주요내용 및 이유, 조치결과 등을 기재한 조치명령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

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조치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치명령 이행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151호(2023. 7. 26.)는 폐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치명령 통보서

조치명령 통보서

관리번호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조치명령의 내용		※ 기재란이 부족시 별지 사용			
조치 기간					
법적 근거					
조치결과 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FAX	
	제출기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와 관련한 조치명령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처리결과 제출시 유의사항>

1. 조치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조치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 간주되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라 함은 <u>법 제9조제6항</u>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대상기관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6. ----- -- <u>법 제9조의2</u> ----- ----- <u>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등</u> ----- ----- ----- ----- -----.
7. “산업기술 확인”이라 함은 법 제14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법 제2조에 의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말한다.	7.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제4조(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대상 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정을 <u>법 제9조 제6항</u> 과 영 제13조의2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국가핵심기술의 판정) --- ----- ----- ----- <u>법 제9조의2제1항</u> ----- <u>산업통상부장관</u> ----- --.
제5조(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u>	제5조(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u>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u>

<u>보호협회</u> 와 공동으로 <u>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www.nct.or.kr)</u>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호협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기술안보센터----- ----- <u>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해당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업무
<신설>	3. <u>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u>
<신설>	4. <u>법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업무</u>
3.·4. (생략)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제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록에 관한 업무	<삭제>
제6조(국가핵심기술 등록)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4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법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	<삭제>

<u>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u>		버, 네트워크, DB, <u>응용프로그램</u>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 5. (생략)	----- <u>응용프로그램</u>, 클라우드서비스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제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등록된 대상기관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보안에 대한 <u>자문</u>, 기술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13조의3----- ----- ----- <u>자문, 보안시설의 설치·운영</u>----- ----- -----.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 ----- ----- ----- ----- ----- -----<u>산업통상</u> <u>부장관</u>----- -----. 1.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은 제2항 <u>각호</u>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u>----- ----- ----- -----.	제18조(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제12조(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① (생략)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정보시스템 유형별(서	제12조(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19조(수출승인 심의)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승인 심의)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산업 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 ----- ③ <u>산업통상부장관</u>은 기술안보 센터에 제18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 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u>산업통상자원부</u>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설>	-----. ⑥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⑦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포괄승인)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무수출내역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19조의2(포괄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⑤ ----- ----- ----- ----- -----<u>산업통상부장관</u>-----	<신 설>	제19조의3 (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u>검토하여</u>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u>산업통상자원부</u> 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u>산업통상부</u>----- ----- ----- ----- -----. ④ ----- ----- ----- -----<u>산</u> -----<u>업통상부장관</u>----- -----.
<신 설> ③·④ (생략)	③ <u>산업통상부장관</u>은 기술안보센터에 제22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4조(수출신고 수리 결정 및 통지)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제23조에 따른 수출신고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4조(수출신고 수리 결정 및 통지)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 ----- -----.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포괄수출신고 심의) ① ·② (생략)	⑥ <u>산업통상부장관</u>----- ----- ----- ----- -----. 제23조의2(포괄수출신고 심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수출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수출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 -----. 제2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대상) ----- -----

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3 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8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심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산업통상부장관-----
-----.

제27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 영 제18조의4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
-----.

1. ~ 7. (현행과 같음)

제28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 -----

-----.

② 산업통상부장관-----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

③·④ (생략)

제29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

센터에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9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

-----.

② 산업통상부장관-----

-----.

제30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 -----

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u>산업통상부장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영 제18조의2 제2항</u> 에 따른 외국인(이하“외국인”이라 한 다)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 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4. <u>영 제18조의3제2항</u> ----- ----- ----- ----- ----- --
제31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30조에 해당하 는 대상기관의 장은 <u>영 제18조4</u> <u>및 제18조의5</u> 등에 따라 국가핵 심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 ----- <u>영 제18조</u> <u>의5 및 제18조의6</u>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u>법 제11</u> <u>조의2 제2항</u> 또는 제6항에 따 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 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 해당)	1. ----- ----- <u>법 제11</u> <u>조의2제2항</u> -----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 발비에 관한 자료(<u>법 제11조</u> <u>의2 제2항</u> 에 따른 신고를 하 는 경우만 해당)	7. ----- <u>법 제11조의</u> <u>2제2항</u> ----- -----
제32조(해외인수·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u>	제32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검토 및 심의) ① <u>산업통상부장</u>

<u>관</u> 은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u>검토하여</u> <u>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u>	<u>관</u> ----- ----- <u>검토</u> <u>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u> <u>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u> <u>리하여야 한다.</u>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분야 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 -----.
<신설>	③ <u>산업통상부장관</u> 은 기술안보 센터에 제31조에 따른 제출서류 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 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 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 병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 -----.
제33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수	제33조(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수

리 결정 및 통지)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32조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 한다.	리 결정 및 통지) ① <u>산업통상부장관</u> -----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신고수리할 때에는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제34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 ① (생 략)	제34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국가 핵심기술이 노출되거나 임의 변경, 삭제되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손상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안사고는 중대사고로 분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산업기술침해신고서(법·영에 따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	2. ----- ----- -----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실태조사 대상·범위·방법) ① (생 략)	제36조(실태조사 대상·범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영 제	② <u>산업통상부장관</u> ----- 영 제

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2조제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개선 권고 이행 현황	8. <u>산업통상부장관</u>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건의사항	10. ----- <u>산업통상부장관</u> -----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u>산업통상부장관</u> -----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할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u>산업통상부장관</u> -----
제37조(설문조사) ①·② (생 략)	제37조(설문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조사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상기관별로 발송하고, 대상	③ <u>산업통상부장관</u> -----

기관	의	장	은	수령	받은	조사결과	
에	이	의	가	있	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	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	17조 제2항	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설문조사	에	참여	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기관	에게	시정	을	명	하	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지시	를	할	수
있	다.						
제38조(현장방문조사)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은	영 제22조 제3	항	에	따라
필요	시	현장방문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④	현장방문조사원	은	산업통상	자원부	담당	공무원,	정보수사기
관	소속	공무원	및	산업기술보	호협회	임직원	등으로
구	성	한					
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	17조 제2항	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방문조사	에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	기관	에게	시정	을	명	하
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지시	를	할
수	있	다.					
제39조(실태조사 결과)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	관장	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조사	를	통	해	실	시	한
실태조사결과	를						

대상기관	에	통	보	하	여	야	한	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필요	시	실태조사	전문기관	또는	기
술	보	호	전문가	에게	실태조사	와	관련	하여
검	토,	자	문,	협	조	및		
분	석	등	을	요	청	할	수	있
다.								
제40조(개선권고)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은	법 제13조	에	따라	실태	조사
의	결과	를	참	고	하	여	대	상
기관	의	장	에게	개	선	을	권	고
할	수	있	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대	상	기관	의	장	에게
개	선	을	권	고	할	경	우	개
선	권	고	의	내	용,	이	행	기
간	등	을	기	재	한	개	선	권
고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	성	하
여	서	면	으로	통	지	한	다.	
③	개선권고	를	받	은	대	상	기관	은
영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에게	개	선	권
고	조	치	결	과	(별지 제3호서식)	를	서	면
으로	제	출	하	여	야	한	다.	
대	상	기관	의	장	은	영 제19조 제2항	단	서
의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
게	개	선	권	고	이	행	기	간
연	장	요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를	작	성
하	여	이	행	기	간	의	연	장
을	요	청	할	수	있	다.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의 주요내용 및 이유, 조치결과 등을 기재한 조치명령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 설>	⑤ 조치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치명령 이행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정례협의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등과 정보의 공유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 정례협의체(이하 "정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정례협의체) <u>산업통상부장관</u>-----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산업기술 유출·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산업기술 유출·침해 대응활동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보안 안내서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 <u>산업통상부장관</u>-----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5일(시행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4조(재검토기한) <u>산업통상부장관</u>----- ----- ----- 2026년 6월 30일----- ----- ----- -----.
--	--